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
고 있는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
사가 많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초 저출생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인 산전 관리를 하여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
- 한편 결혼, 임신, 출산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예식장 운영사업에 있어, 공공예식장은 상시 설치된 일반 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설치·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
- 그런데 공공예식장 신청자의 경우 해당 설치·철거비용과 더불어 장소별 대관 규정에 따라 ‘무료~최대 120만원’에 이르는 대관료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비 신랑·신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 및 공공예식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